제보자 보호 규정

목 차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보호대상)

제 3 조 (보호주체)

제 4 조 (보호사항)

제 5 조 (비공개원칙)

제 6조 (비밀준수 엄수)

제 7 조 (명시원칙)

제 8 조 (기타 제보자 보호조치)

제 9 조 (감사인 수행지침)

제 10 조 (징계)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의 목적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 주체와 기준,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보자가 선의의 제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,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.

제 2 조 (보호대상)

- ① 제보자 보호는 선의의 제보자가 불법적·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한 경우에 한하며,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거나,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 본 규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제 3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.

제 3 조 (보호주체)

제보자 신분 보호의 주체는 감사인을 포함한 환경시설관리㈜ 전 구성원으로 한다. 감사 인은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부서의 구성원을 의미한다.

제 4 조 (보호사항)

- 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비밀을 유지한다.
- ② 제보자가 제공한 관련 증거, 수집정보 및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보호한다.
- ③ 제보자 중 내부고발자의 경우는 신변보호,신분보장, 책임과 징계의 감면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조 (비공개 원칙)

- ① 제보자에 대한 정보는 제보 접수자와 제보조사업무 수행자에게만 공개하며, 이 외는 전부 익명으로 처리한다.단, 중대한 부정,비리 관련 건은 감사책임자(필요시 감사책 임자가 지정한 자)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.
- ② 감사담당 부서는 제보 접수사실 자체는 물론 제보사실을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공개하지 않는다.
- ③ 고객불만 등 단순 민원사항 및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
제 6조 (비밀준수 엄수)

감사인은 제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.

제7조 (명시 원칙)

제보자가 윤리경영 제보 사이트 접속 시 제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, 전화 접수시 제보자 신분보호에 대한 안내 및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.

제 8 조 (기타 제보자 보호조치)

- ① 감사담당 부서는 내부고발자가 부득이하게 신분이 노출된 경우 부당한 배치 전환, 승진 봉쇄, 강제 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 없도록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부정, 비리 제보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경감할 수 있다.
- ③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감사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감사담당 부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.

제 9 조 (감사인 수행지침)

- ①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, 팩스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시건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따른다. 단,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중요한 부정사건,회사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, 언론보도 사항인 경우 면책가능할 수 있다.
- ③ 감사책임자는 제보 조사와 관련한 제반 보안관리 규정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제 10 조 (징계)

① 환경시설관리㈜의 모든 구성원은 내부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승진, 이동, 평가,

근무조건 상의 차별,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또한 제보자 신분, 사유 및 제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확인 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, 제보자 또는 특정인을 제보자로 추정하여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본 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은 전사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조치하되, ①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